

<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 미술여행 프로그램 공모 요강(수정)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전 국민 대상 미술 소비문화 확산과 미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 사업의 일환으로 <2025 미술여행 프로그램 공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동 사업에 참여할 단체·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개요

- (공모명) 2025 미술여행 프로그램 공모
- (공모기간) 2025. 2. 5.(수) ~ 3. 26.(수), 16:00까지
- (사업기간) 2025. 5. ~ 10.(6개월)
- (공모내용) 미술여행 신규 프로그램 기획·운영비 지원
- (공모방식)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지원대상)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단체·기관
- (지원규모) 총 210백만원(30백만원x7개)

□ 공모내용

- (세부내용)

구분	내용
지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혹은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기관 ※ e나라도움을 통한 민간경상보조금 직접 수령 및 예산 집행 가능 기관
신청 자격 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한국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했으나,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단체 •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동 사업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혹은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 •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 기금모음행사(펀드레이징) 형태를 동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관례적인 회원전/단체전/연례전/학위청구전 또는 학교 단위 졸업작품전 등 • 지방자치단체 •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 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제7조 제4항(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2022.05.16.개정)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p>단체 및 개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법인·단체 또는 대표자가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 기 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 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센터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단,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제외)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여행 신규 프로그램 기획·운영비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기관별 30백만원
지원 불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홈페이지 구축비 등 • 부대비용 : 간담회 및 회의비 등 업무추진비 • 행사 답사비 등 준비 비용 :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하며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예산 편성 • 기타 사항: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건 내외
지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신진 및 중견 작가 전시 중심 기획·운영 - 비엔날레 소재 지역의 경우, 비엔날레를 포함하여 구성 필수 - 권역 내 미술관·화랑·전시공간 3곳 이상 연계, 8회 이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박 2일 코스 기획, 셔틀버스 운영 가능(지역 내/타지역연계) -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요소 추가 가능 • (부대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티스트 토크, 체험 프로그램, 스탬프 투어 등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 1개 이상 운영 • (운영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9월 중 • (참가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8. 18.(월) 일괄 오픈을 통한 공개모집 - 대한민국 미술축제 누리집에 예약 링크 연동 필수 • (참가비)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노쇼방지를 위한 보증금 수령 및 반환 가능 • (언론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①참여자 모집, ②현장스케치 혹은 성료) 배포 필수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설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무선 송수신기 사용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 조사) - 관람객 만족도 조사 100부 이상(조사 문항 예경 제공)
<p>우대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을 테마로 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 시 우대 •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구성 시 우대 • 외국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사회 배려 계층을 위한 코스 기획·운영 시 우대
<p>의무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총 보조금(지원금) 증빙 필수 • 심의 기준에 의거한 선정 및 교부 확정 후, 코스 및 프로그램 수 등 사업의 규모가 변경 될 경우 지원 결정액이 축소·조정될 수 있음 • 동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한 모든 책임은 지원 단체에게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 임직원 연관(직계존비속 포함)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관련) * 제13조(보조금 사용 및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e나라도움 교육(온라인_이론 1회 4시간, 오프라인_실습 2회 6시간) 수료증 제출 • 사업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실무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및 이수 확인서 제출 •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해 기획자, 비평가, 작가사레비(아티스트피) 등 지급 시 문체부에서 고시한 표준계약을 활용하여 계약 체결 • 미술창작대가제도 도입(‘22.2) 에 따라 작가사레비 지급 시 참여비 및 창작사레비 구분 • 매년 ‘시각예술실태조사 (*구)미술시장실태조사) 응답필수 • 전시 운영 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관람객 및 인파 관리 계획 마련 필수 • 「예술인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시 예술인(기획자 포함)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

	<p>※ 불이행시 「예술인 복지법」 제18조(과태료)에 의거하여 추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p> <p>* '문화예술용역'이란?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받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하는 것으로, 고용·도급·업무위탁·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문화예술용역에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천만원 초과 용역 계약 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누리장터) 이용 필수 • 선정자 대상 사전워크숍·성과공유회 진행 시 참석 필수 •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p>* 정산/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 **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 후 정산보고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나라도움 상 집행·정산·실적보고·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 • 보조금은 반드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점검·검증 • 통합 홍보물 제작 시 제작 적극 참여 • 사업평가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시, 적극 협조 • 모든 홍보/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로고 삽입
--	--

○ (지원항목)

목	세목	세세목	내용
인건비	일용임금	일용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 근로자, 단순보조 인력비 • 주휴수당, 원천징수, 사회보험료
운영비	일반수용비	전문가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원고, 번역, 진행, 수어 도슨트 등 일회성 투입인력 사례비 • 원천징수
		홍보마케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매체수수료 • 홍보품(기념품), 리플렛, 포스터 등의 생산/인쇄비
		소모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모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용품, 재료비 등 직접적으로 소모되는 물품
	임차료	대관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관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교육, 부대프로그램 등을 위해 활용하는 공간 대관비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장비 등에 대한 임차료
일반용역비	대행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대행비(홍보물 디자인 등) • 행사대행비(프로그램 운영 대행 등) • 영상제작비 • 기타 용역비(예술경영지원센터 승인 필요) 	

* 세부내용은 지원신청서상 확인 가능

□ 공모접수

- (접수기간) 2025. 2. 5.(목) ~ 2025. 3. 26.(수)
- (접수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파일형식)	방법
1	•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e나라도움 작성 제출
2	• 지원신청서 및 붙임서류(HWP) [붙임1] 사업 책임이행 서약서 [붙임2]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붙임3]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서약서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5] 지원사업 신청자격 확인 및 확약서	e나라도움 첨부 제출
3	•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JPG/PDF)	

□ 공모심의

- (심의방법) 국내 미술 관련 전문가(5인)에 의한 서류심의
- (접수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
- (심의기준)

연번	항목	세부내용	배점
1	프로그램 우수성	• 사업 목적·취지의 이해 및 부합성 • 사업내용의 참신성 및 차별성	30
2	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 사업 구체성 및 현실성(일정, 예산, 내용 등) • 프로그램 운영 계획·시간의 적절성 • 홍보 및 참여자 모객 계획의 적절성	40
3	기대효과	• 미술 소비 문화 확산 효과 • 미술여행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30
합계			100

※ 우대사항 : ① 미술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 ②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하거나, ③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아동·청소년, 외국인 등) 초청 프로그램 운영 시 우대

□ 추진절차

단계	일정	세부 내용
공모 접수	~2025. 3. 26.(수) 16:00	• e나라도움 접수
서류심의	4월 1주	• 서류심의
결과발표	4월 2주	• 최종 선정기관 발표 ※ e나라도움 및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오리엔테이션	4월	• 사전 오리엔테이션 진행
지원금 교부(1차)	4월 ~ 5월	• 교부신청 접수 및 확정(1차)
지원금 교부(2차)	7월 ~ 8월	• 교부신청 접수 및 확정(2차)
사업추진	5월 ~ 10월	• 사업 수행
정산 및 실적보고	11월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e나라도움 잔여 절차 마무리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 (사업 관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유통팀
 - (유선) 02-2098-2910, (이메일) koreaartweek@gokams.or.kr
 - (문의 가능 시간) 평일(월~금) 10:00~16: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e나라도움 문의) e나라도움 고객센터
 - (유선) 1670-9595